

제201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10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22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4 ~ 23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 ~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 ~ 25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4 ~ 26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4 ~ 27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4 ~ 28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4 ~ 29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4 ~ 30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4 ~ 31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2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 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안 제3조)

- 명 칭 : 규제개혁추진단
- 소 속 : 부군수 직속
- 설치기간 : 설치일부터 1년(한시기구)

나. 분장사무 조정(안 제3조)

- 규제개혁추진단
 - 사무인수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 사무이관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4. 01. ~ 4. 2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목 “(실장·과장의 직급 등)”을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장·과장”을 “실장·과장·단장”으로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실·과의 설치)”를 “(실·과·단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감사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장·과장”을 “실장·과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제개혁추진단장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u>실장·과장</u>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u>실·과</u>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u>,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u>실장·과장</u>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신 설></p> <p>1. 기획감사실장 가. ~ 바. (생략) 2. ~ 13. (생략)</p>	<p>제2조(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 ①-----<u>실장·과장·단장</u>-----<u>실·과·단</u>-----</p> <p>② -----</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u>규제개혁추진단, 기획감사실</u>-----</p> <p>② <u>실장·과장·단장</u>-----</p> <p>1. <u>규제개혁추진단장 :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u></p> <p>1의2. ----- 가. ~ 바. (현행과 같음) 2. ~ 13.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3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지방소득세 부과방식 변경,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인력 증원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증원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별표 3)

○ 658명 → 668명(증10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증 10명

- 현행 : 586명(본청265명, 의회11명, 직속기관91명,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7명)

- 조정 : 596명(본청275명, 의회11명, 직속기관91명,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연 268백만원 기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4. 01. ~ 4. 2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 중 “658명”을 “668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644명”을 “65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행정6급 1명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58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4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u>668명</u>-----</p> <p>-----</p> <p>1. -----<u>654명</u></p> <p>2. -----</p>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68 658	292 282	14	125	62	63	51	38	148
정	무직	1	1							
일 반 직	소계	635 625	289 279	14	97	34	63	49	38	148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596 586	275 265	11	91	30	61	45	37	137
별	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	구직 (연구사)	6	1		3	3		2		
지	도직 (지도사)	25			25	25				
카	능직(삭제)	0	0	0	0	0	0	0	0	0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세출	국비	27	27	27	27	27	135
	군비	241	241	241	241	241	1,205
	소계(a)	268	268	268	268	268	1,34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268	268	268	268	268	1,340

3. 관련 의견

-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및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 268,800천원
 - 기본급 255,600천원, 수당 등 13,200천원
- ※ 국비부분은 사회복지 증원 3명의 인건비 30% 교부

작성자 : 행정과장 이환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4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법체계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경우 군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군의원 위촉 및 제척규정 삭제함

(안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 (삭제)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위촉
- (삭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 제척
-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관련

나. 경상남도 개선권고 사항 반영함(안 제10조제4항후단)

- (삭제)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4. 3. 21. ~ 4.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p> <p>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신 설></p> <p>④ ~ ⑦ (생략)</p>	<p>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p> <p>1. 군 소속 공무원 2. ----- ----- -----</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p>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p> <p>4.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군의회 의원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 ③ (생략)</p>	<p>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 ----- ----- -----</p> <p>1. ----- ----- -----</p> <p>2. ----- ----- -----</p> <p>3. ----- ----- -----</p> <p><삭 제></p> <p>4.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이 경우 시설의 증·개축 또는 추가 신축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u></p> <p>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작성한다.</p>	<p>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 ----- ----- -----</p> <p>② ----- ----- ----- ----- -----</p> <p>③ ----- ----- ----- -----</p> <p>④ ----- ----- ----- ----- -----</p> <p><u><삭 제></u></p> <p>⑤ ----- ----- ----- ----- -----</p>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5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마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마리면 대동리 5개(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행정리로 이미 구분 확정되어 실질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면 대동리의 행정리를 조정함(안 별표 2)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 신기, 시목, 엄대, 동편, 서편

나. 마리면 대동리 이장의 정수를 조정함(안 별표 2)

○ 4명 ⇒ 5명(증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 2014년 2회 추경시 2,28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4. 2. 17. ~ 3. 09.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계		267	(개정 1995. 12. 9. 조례제1378호)
거창읍	상림리	2	원상동, 상동
	중앙리	2	하동, 죽전
	대동리	4	동동, 강양, 개봉, 동산
	대평리	1	중동
	김천리	1	김천동
	송정리	3	송정, 운정, 절부 (개정 1995. 8. 18. 조례제1370호)
	정장리	2	정장, 국농소
	장팔리	3	장팔, 중산, 응곡
	서변리	4	모곡, 사마(개정 2007. 8. 1. 조례제1846호), 사동, 원동
	동변리	3	동변, 죽동, 구산
	학리	3	학동, 구례, 의동
	양평리	4	양평, 당동, 노혜, 김용
	가지리	5	개화, 중촌, 지내, 교촌, 성산
주상면	도평리	2	도평, 상도평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연교리	2	임실, 연교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내오리	2	오산, 오류동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완대리	3	완수대, 도동, 넘터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성기리	3	원성기, 정동, 송희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거기리	3	거기, 장포, 고대 (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남산리	3	원남산, 포덕동, 보광(개정 2006. 8. 14. 조례제1806호)
응양면	동호리	2	동호, 성북
	죽림리	4	운평, 누룩재, 죽림(개정 2007. 8. 1. 조례제1846호), 구암 (개정 1995. 12. 9. 조례제1378호)
	노현리	3	노현, 원촌, 화동
	산포리	6	산포, 석정, 우량, 강천, 금광, 어인
	군암리	3	용전, 군암, 송산
	신촌리	4	아주, 신촌, 왕암, 장지
	한기리	2	오산, 한기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고 제 면	농 산 리	4	원농산, 입석, 손항, 온곡
	개 명 리	3	개명1구, 개명2구, 수내
	봉 계 리	3	탑선, 원기, 원봉계
	봉 산 리	4	와룡, 용초, 구송, 둔기
	궁 향 리	3	학림, 원궁향, 산양
북 상 면	갈 계 리	3	갈계, 탑불, 중산
	소 정 리	2	소정, 개삼
	농 산 리	1	용수막 (1995. 8. 18. 조례제1370호)
	병 곡 리	1	병곡
	산 수 리	1	산수
	월 성 리	3	월성, 내계, 황점
	창 선 리	1	창선
위 천 면	장 기 리	4	장기, 창촌, 사마, 거차
	남 산 리	2	남산, 금곡
	상 천 리	3	상천, 서원, 강남
	강 천 리	3	강동, 마항, 면동
	황 산 리	2	황산1구, 황산2구 (개정 1992. 6. 11. 조례제1271호)
	당 산 리	1	당산
	모 동 리	4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마 리 면	영 승 리	3
울 리		2	풍계, 상울
월 계 리		4	월화, 영신, 학동, 성락(개정 1992. 6. 11. 조례제1271호)
말 흘 리		5	진산, 지동, 주암, 창촌, 원말흘
고 학 리		3	병향, 고신, 고대
대 동 리		5	신기, 시목, 엄대, 동편, <u>서편</u>
하 고 리		2	고창, 소곡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남 상 면	춘 전 리	1	춘전
	진 목 리	1	진목
	둔 동 리	4	남진, 동령, 신기, 둔동
	오 계 리	3	외등, 목동, 오계
	무 촌 리	5	상매, 매산(개정 2002. 5. 9. 조례제1639호), 무촌, 지하, 인평
	송 변 리	1	송변
	대 산 리	4	괴화, 청림(개정 2001. 3. 15. 조례제1614호), 한산, 대현
	월 평 리	1	월평
	전 척 리	2	전척, 고척
	임 불 리	3	임불, 남불, 월포
남 하 면	둔 마 리	3	대촌, 신촌, 안흥
	양 향 리	4	아주, 내곡, 상촌, 대곡
	무 룡 리	4	양곡, 무룡, 월곡, 산포
	대 야 리	4	대야, 오가, 용동, 가천
	지 산 리	5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신 월 면	수 월 리	2	수다, 월동
	양 지 리	3	수옥, 양지, 저전
	구 사 리	3	감악, 구사, 신기
	과 정 리	2	과정, 세안
	덕 산 리	3	청연, 내동, 오례
	청 수 리	2	청용, 수동
	중 유 리	2	중유, 예동
	대 현 리	2	내외탐, 대현
	와 룡 리	2	비곡, 소야

읍 면 명	리 명 칭	정 수	행정리의 명칭
가 조 면	석 강 리	3	생초, 왕대, 석강
	기 리	4	양기, 음기, 광성, 학산
	대 초 리	2	대초, 방촌
	동 례 리	3	안금, 중평, 동례
	장 기 리	4	역촌, 장기, 원천, 신천,
	사 병 리	3	병산, 창촌, 당동
	마 상 리	3	상마, 중마1구, 중마2구
	수 월 리	4	월포, 상수월, 용당소, 용전
	일 부 리	3	도산, 부산, 녹동
	도 리	3	도산당, 화곡, 대학동
가 북 면	우 혜 리	3	우혜, 감월, 어인
	박 암 리	3	공수, 박암, 옥산
	몽 석 리	2	몽석, 내촌
	용 암 리	3	송정, 용암, 개금
	중 촌 리	2	심방, 중촌
	해 평 리	3	회남, 추동, 해평
	용 산 리	2	용산, 울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제4항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환 철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6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23조제11항)
 - 대상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기간 : 각각 10일
 - 사용방법 : 한 번만 분할 사용,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음
복무관리부서 사전허가 거쳐야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4. 2 ~ 4.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며,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다.
2.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생략) <u><신설></u></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 및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p> <p>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며, 한 번만 분할 사용 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사용을 할 수 없다.</p> <p>2. 복무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복무관리부서에서는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7
----------	-----------

제출일자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14.01.01.)개정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안 제3조)
 - (현행) 2013년 12월 31일 ⇒ (변경) 201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3. 05. ~ 3. 2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2014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8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군의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을 위촉하여 군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위촉내용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현행) 위원장 1명 : 군수

⇒ (변경) 위원장 2명 : 군수, 민간위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나. 위원 중 의회의원 위촉 내용 삭제함(안 제3조제4항)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관련하여 위원 중 군의원 위촉내용 삭제

다. 상위법 개정조문 및 중앙조직개편 내용 반영함

○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3. 24. ~ 4. 13.

(나) 예고결과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9조제3항·제20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2호 중 “영 제2조제7항제2호”를 “영 제2조제8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 10. (생략)</p> <p>1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2. ~ 1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u>」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p> <p>6. ~ 10. (현행과 같음)</p> <p>11. ----- ----- 「<u>유통산업발전법</u>」 제2조제16호----- -----</p> <p>12. ~ 16. (현행과 같음)</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u>위원장</u>을 포함한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u>군수가</u> 되며, 위원은 <u>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u>,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u>군수가</u>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⑤ ~ ⑦ (생략)</p>	<p>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p> <p>③ ----- <u>위원장 2명</u>----- -----</p> <p>④ -----<u>군수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u>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u>군 소속 공무원</u>-----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p> <p>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u>」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p>	<p>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 ② (생략)</p> <p>③ ----- -----</p> <p>1. ----- ----- 「<u>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u>」 제116조의2제1항-----</p>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29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서식의 용어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4. 4. 03. ~ 4. 2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과·단”을 “실·과·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제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u>자로서</u>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자</u>를 말한다.</p> <p>5. ~ 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사람으로서</u>----- ----- -----<u>사람을</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 ② (생략)</p> <p>③ 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u>자</u> 중 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근로자로 하며,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7조(최고근로인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사람</u>----- -----</p>
<p>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의 <u>실·과·단·사업소·읍면</u>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 -----<u>실·과·직속기관</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의3(창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u>자</u>를 말한다)에 대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9조의3(창업 지원) ① ----- ----- ----- -----<u>사람을</u>-----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생 략)</p> <p>1. (생 략)</p> <p>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p> <p>3. (생 략)</p> <p>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u>자</u>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범위</u>-----</p> <p>3. (현행과 같음)</p> <p>③ -----<u>사람은</u>----- ----- ----- -----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30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거창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수탁자의 진입제한을 완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6조후단)

○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나.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
⇒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 제54조제1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 ⇒ 제3조제16호
- 매년 실시하는 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부담을 완화함

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함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의견반영(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 당초 : 1차 50, 2차 100, 3차 200만원
 - 수정 : 1차 40, 2차 80, 3차 120만원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4. 10. ~ 4. 30.
 - (나) 예고방법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을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다중이”를 “그 밖에 많은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 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
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

제4조 중 “공중화장실 등”을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연간”을 “3년마다 1회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호·제2호, 제18조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호·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7조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p>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p> <p>2. 법 제3조제15호규정 및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p> <p>3.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 제3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p>	<p>제3조(적용범위) -----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p> <p>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p> <p>3. 그 밖에 많은 사람이----- ----- ----- -----</p>

현행	개정안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u>공중화장실</u>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u>공중화장실</u>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u>공중화장실</u> 등-----<u>공중화장실</u> 등-----</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u>공중화장실</u>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u>공중화장실</u>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u>공중화장실</u>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p> <p>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② -----에 따라----- -----범위-----</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u>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u>공중화장실</u>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u>연간</u>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u>화장실</u>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u>공중화장실</u>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1회이상-----</p> <p>② <u>제1항에 따른</u>-----</p>

현행	개정안
<p>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u>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u>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u>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u>----- -----</p>
<p>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p>	<p>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u>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u>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u>에 따른</u>----- ----- ----- ② <u>제1항에 따라</u>----- ----- -----</p>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u>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 -----<u>범위</u>----- -----</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u>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u>각호</u>와 같다. 1. ~ 4. (생략)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u>각호</u>와 같다. 1. ~ 3. (생략) 4.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u>에 따라</u>----- -----<u>각 호</u>----- 1. ~ 4. (현행과 같음) ② -----<u>각 호</u>----- 1. ~ 3. (현행과 같음) 4. -----<u>에 따른</u>----- ----- ③ (현행과 같음)</p>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40	80	12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 비고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연도						
	규모		부지 : m ²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음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31
----------	-----------

제출연월일	2014. 4.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폐지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면 되고,
- 1회용품 사용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
-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삭제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원안의결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3. 28. ~ 4. 1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